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00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○○○○
기 타	㈜♧♧♧♧♧
기 타	A
기 타	B

2. 조치내용

□ **(원안의결)** ㈜○○○○ 수사기관 통보
㈜♧♧♧♧♧ 수사기관 통보
A 수사기관 통보
B 수사기관 통보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**((주)○○○○)** 회사는 □□□ 주식 양수인으로 '21. 10. 21. 최대주주 C 등과 □□□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동사 주식 579,284주 및 2회차 전환사채권 5억원(103,199주)을 보유(7.84%)하게 되어 그로부터 5일 이내인 '21. 10. 28.까지 대량보유상황을 신규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

- 또한, '21. 11. 24. 전환 주식을 매도하면서 보유 주식수가 감소하여 보유비율이 6.66%로 1%이상 변동하게 되어 그로부터 5일 이내인 '21. 12. 1.까지 새로 발생한 변동내용('21. 11. 25. 전환주식 매도내역)을 포함하여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,

- 이후 주식양수도 계약 취소('22.3.29.)에 따라 보유비율이 1%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변동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3회 위반한 혐의가 있음

※ ○○○○의 대표이사 A를 ○○○○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행위자로 보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8조에 따라 양벌 적용

○ **((주)♧♧♧♧♧)** 회사는 □□□ 주식 양수인으로 '21. 10. 21. 최대주주 C 등과 □□□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동사 주식 482,218주 및 2회차 전환사채권 7억원(144,478주)을 보유(8.03%, 특수관계인 포함)하게 되어 그로부터 5일 이내인 '21. 10. 28.까지 새로 발생한 변동내용('21. 10. 27. 특수관계인의 매매내역)을 포함하여 대량보유상황을 신규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'21. 10. 29. 지연 보고하면서, 동 보고서에 동사 임원(특수관계인)인 D의 보유 주식(76,390주, 0.87%)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

- 이후 '21. 11. 25. 특수관계인인 동사 임원 E, D의 □□□ 주식 매매 및 전환 주식 매도 등에 따라 보유 주식이 506,986주(5.73%)로 감소하여 보유비율이 1%이상 변동하게 되어 그로부터 5일 이내인 '21. 12. 2.까지 새로 발생한 변동내용('21. 12. 1. 특수관계인의 매매내역)을 포함하여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

- 또한, 이후 계약 취소('22.3.29.)에 따라 보유 주식 수가 40,763주(0.43%)로 감소하여 보유비율이 1%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변동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3회 위반한 혐의가 있음

※ ♧♧♧♧♧의 실질사주 B를 ♧♧♧♧♧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행위자로 보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8조에 따라 양벌 적용

나. 근거법규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3항, 제444조 제18호, 제445조 제20호, 제448조